

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(제19조 관련)

구 분	금 액
가. 피해자 본인	2천만원
나. 배우자(동거중인 사실혼관계인 사람을 포함한다), 미혼자(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, 사실 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)의 부모	피해자 본인의 각 1/2
다. 부모·자녀	피해자 본인의 각 1/4
라.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, 형제자매, 동거 중인 시부모·장인·장모	피해자 본인의 각 1/8

- (주) 1.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
센트를 가산하고,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
20퍼센트를 감액한다.
2.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
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.